

# 교원연구년제 세칙

(제정 2024. 3.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연구년제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년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① 연구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학기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2분의 1을 적용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연구년 시작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4호는 연구년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실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 따른다.

1. 신규입용 후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2. 직전 연구년 실시 후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다만, 직전 연구년 실시 후 정해진 기간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다음 학기로부터 산정한다)
3. 정년퇴임 예정일까지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교원
4. 직전 4개 학기의 연구업적이 100점 이상인 교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연구년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연구년을 신청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4호와 제5호는 연구년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원
2. 직전 4개 학기 중에 책임시간을 미충족하고 현재 학기까지 해당 시간을 보충하지 않은 교원 (다만, 현재 학기에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책임시간을 미충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직전 연구년 실시 후 연구업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
4. 교무위원으로 보직 재임기간 중에 있는 교원
5. 소속 교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여 휴직, 연구년, 과전 등을 하게 되는 학과의 교원 (다만, 교원의 수가 3명 이하인 학과는 설립 6년 후부터 매년 1명씩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소속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년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추천이 된 경우에는 선발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다.

1. 최근 2년 연속 정원 내 신입생 최종 등록률이 80% 미만인 학과의 교원
2. 최근 2년 연속 재학생 중도 탈락률이 10% 이상인 학과의 교원

**제3조(선발인원)** ① 선발인원은 해당 학기에 선발예정인 총 교원의 수를 단과대학별로 배정하여 단과대학별 선발인원을 산정한다. 다만, 수퍼스타칼리지, 미래융합대학, 대학원 등 소속 교원은 통합하여 1명을 선발인원으로 한다.

② 단과대학별 선발인원을 결정하기 위한 선발지수는 제2조제1항의 신청자격을 갖춘 교원의 수와 해당 학기에 선발예정인 총 교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단과대학별 선발지수} = \frac{\text{해당 단과대학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교원의 수}}{\text{신청자격을 갖춘 교원의 총수} - \text{제1항 단서 소속 교원의 수}} \times (\text{선발 예정인 교원의 총수} - 1)$$

③ 단과대학별 선발인원은 단과대학별 선발지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값은 반올림에 따라 내림이 되면 다음 학기에 가산하고 올림이 되면 다음 학기에 차감하며, 선발지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선발인원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심사 및 추천)** ①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천인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단과대학별 선발인원 외에 최대 2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대학은 대학별로 최대 2명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순위는 소속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여한다.

**제5조(선발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원
2. 제4조의 단과대학별 추천 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된 교원
- ②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단과대학별 선발인원 범위에서 추천된 교원은 1순위, 그 밖의 교원은 2순위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추천된 교원은 연구업적이 가장 높은 교원을 1순위, 그 밖의 교원을 2순위로 한다.
- ③ 연구년 선발 대상 교원 중에서 제2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그 순위를 한 등급 낮춘다.
- ④ 선발 예정인 교원의 총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연구년 대상 교원을 선발한다.

1. 연구년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교원
2. 연구년을 실시한 총기간이 짧은 교원
3. 최근 연구년 실시 후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 (다만, 연구년을 실시하지 않은 교원은 총 재직기간으로 한다)
4. 직전 4개 학기의 연구업적이 많은 교원

##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년 심사기준

순	심 사 기 준	배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적</li> <li>※ (신청교원 연구업적 점수/신청교원 중 연구업적 최고점수)×40점</li> <li>※ 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li> </ul>	4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계획서 평가 점수(평가위원 정성평가)</li> <li>※ 탁월: 30~26점, 우수: 25~21점, 보통: 20~11점, 부족: 10~6점, 미흡: 5~0점</li> </ul>	3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년 신청 교원이 소속된 학과의 취업률(최근 공시자료 기준)</li> <li>※ (학과 취업률/100)×20점</li> <li>※ 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li> </ul>	2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년 신청 교원이 소속된 학과의 재학생 충원율(최근 공시자료 기준)</li> <li>※ (학과 재학생 충원율/100)×5점</li> <li>※ 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li> </ul>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년 신청 교원의 교내 근무년수</li> <li>※ 25년 이상: 5점, 20년 이상: 4점, 15년 이상: 3점, 10년 이상: 2점, 6년 이상: 1점</li> <li>※ 연구년 수혜자의 경우 직전 연구년 복귀일을 기준으로 교내 근무년수 계산</li> </ul>	5
<b>합 계</b>		<b>100</b>
기타 의견		

※ 연구년 심사기준은 소속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